

유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누구든지 자신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지만, 유언의 방식과 유언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이라도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	1
1. 유언개요	4
1.1. 유언	4
1.1.1. "유언"이란	4
1.1.2.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5
1.1.3.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7
1.1.4. 유언 시 체크리스트	9
2. 유언하기	13
2.1. 자필증서유언	13
2.1.1. 자필증서유언	13
2.2. 녹음유언	16
2.2.1. 녹음유언	16
2.3. 공정증서유언	16
2.3.1. 공정증서유언	16
2.4. 비밀증서유언	19
2.4.1. 비밀증서유언	19
2.5. 구수증서유언	20
2.5.1. 구수증서유언	21
3. 유언철회	24
3.1. 유언의 철회	24
3.1.1. 유언의 철회	24
4. 유언효력	27
4.1. 유언의 효력	27
4.1.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7
4.1.2. 유언의 무효·취소	27
4.2. 유증	29
4.2.1. 유증	29
4.2.2. 유증을 받는 사람	32
4.2.3. 포괄유증	33
4.2.4. 특정유증	34
4.2.5. 부담부 유증	37
5. 유언집행	39
5.1. 유언의 집행	39
5.1.1.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9
5.1.2.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41
6. 상속세납부	46
6.1. 상속세 납부	46
6.1.1. 상속세 납부	46

1. 유언개요

1.1. 유언

1.1.1. "유언"이란

"유언"이란

유언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1
<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생전에 자녀(1남 1녀)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에 A의 이러한 말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A. A의 이러한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A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1남 1녀)와 부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유용한 법령정보 2
< 유언을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 Q. A는 유언하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A. 자연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결과, A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관련 개념

상속(相續)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과 상속 모두 유언자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73조제1항).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증(遺贈)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1.1.2.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따라서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
<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당시에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A.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참조).

제한능력자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유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17세 이상인 미성년자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및 제1062조).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언이라 해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조 및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유언을 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에 한해 유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1.1.3.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유언법정주의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법」 제844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소(訴)로써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46조).

인지(認知)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9조제2항).

※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59조제1항 및 제863조).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31조).

※ "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 및

찾기 쉬운 생활법령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40조의2).

※ "후견감독인"이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遺贈)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민법」 제 1074조부터 제1090조까지).

※ 유증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유언효력-유증-유증>](#)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것은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 47조제2항).

※ "재단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技藝)·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의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하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32조 및 제47조제2항).

※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재단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제2호).

※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및 위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93조).

유용한 법령정보 4

< 법정유언사항은 아니지만 유언장에 적으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

Q. 법정유언사항이 아니어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작성하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A. 1. 각종 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 수령자

2.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 등

3. 채무의 존재 등

4.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

5.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등

6. 시신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및 그 매장 장소

7. 유족 및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1.1.4. 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능력이 있을 것

유언능력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61조). 따라서 17세 미만인 사람이 행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제1항).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때에 유언을 해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유언의 방식을 결정할 것

유언 방식에 따른 효력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 방식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유언

-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녹음유언

- √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유언

-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유언

-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구수증서유언

-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증인을 제외할 것

증인 제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이 진정으로 성립하였다는 것, 즉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유언·구수유언을 하려는 유언자는 증인을 미리 섭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인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68조, 「민법」 제1069조 및 「민법」 제1070조).

증인이 필요한 유언의 방식	필요한 증인의 수
녹음유언	1명 이상
공정증서유언	2명
비밀증서유언	2명 이상
구수증서유언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결격자로서 유언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제1항).

미성년자(未成年者)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과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直系血族)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상 증인결격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공증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72조제2항 및 「공증인법」 제33조제3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 사람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연사항에 대해 유연할 것

유연

유연자는 법이 정한 유연사항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유연합니다.

※ 법이 정한 유연사항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 [<유연개요-유연-유연을 할 수 있는 사항>](#) 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유언하기

2.1. 자필증서유언

2.1.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자필증서유언의 예

자필증서유언의 예

자필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자필로 작성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법률서식 참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유언자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유언사항

1.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재산의 사인증여(민법 제562조 계약임, 등기원인은“증여”가 된다) 또는 유증(민법 제1073조 단독행위임, 등기원인은“유증”이 된다)에 관하여,

○○시 ○○동 ○○번 대지 ○○㎡는 이를 상속인 중 장남 □□□(주소:

생년월일:)에게 증여하고,

○○시 ○○동 ○○번 대지 ○○㎡와 동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층 주택 건평 ○○㎡는 차남 □□□(주소:

생년월일:)에게 증여하고, 이 사인증여(또는 유증)는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위 사인 증여계약(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지정한다.

작성일자 서기 20○○년 ○월 ○일

유언자 성명 ○○○ (인)

※ 자필유언증서의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의 변경

유언장 내용의 변경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2항).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지만(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2.2. 녹음유언

2.2.1. 녹음유언

"녹음유언"이란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유언의 방법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3. 공정증서유언

2.3.1.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예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참조).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유언의 취지를 구수

유언자는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 판례

√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호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권 상실 의사의 표시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1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경우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위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2항).

만약 위와 같은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3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경우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이를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4항).

※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민법」 제1004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민법」 부칙 제2조(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개정)].

※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민법」 제1004조의2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부칙 제3조(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개정)].

상속권의 상실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6항 본문).

다만,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6항 단서).

2.4. 비밀증서유언

2.4.1.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주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2항).

비밀증서유언의 방법

유언의 취지 등 증서의 작성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좋습니다.

만약 타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 라고 쓰고 서명합니다.

증서의 엄봉·날인

증서는 **엄봉(嚴封)·날인(捺印)**해야 합니다.

증서를 엄봉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인"이란 서류 등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내지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확정일자인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 즉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찾기 쉬운 생활법령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판례

- ▷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가 있는 사문서를 말합니다(「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비밀증서유언의 예

비밀증서유언의 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작성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의 작성례]

유 언 장

나 홍길동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에게 상속한다.
2. 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면 번지)은 처 에게 준다.
4. 유언집행자는 로 한다.
5.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유언자 홍길동 (인)

필기자 홍희동 (인)

유언장 봉투

유언장을 엄봉한 봉투의 표면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비밀증서 유언 봉투의 작성례]

홍길동의 유언장

제출일: 2009. 1. 10.

유언자: 홍길동 (인)

증 인: 김대한 (인)

증 인: 이민국 (인)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2.5. 구수증서유언

2.5.1.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및 제1070조제3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급박한 사유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를 말하며 본인이나 증인 그 밖에 주위 사람에 의해 위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

▶ 판례

유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증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구수 및 필기 낭독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 판례

√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민법」 제1070조 소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증인의 승인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검인 신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구수증서유언의 예

구수증서유언의 예

구수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작성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작성례]

유 언 장

유언자(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〇〇번지)는 2009. 1. 10. 〇〇병원 〇〇호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술했습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〇〇에게 상속한다.
2. 〇〇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〇〇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〇〇면 〇〇번지)은 처 〇〇〇에게 준다.
4. 〇〇〇(서울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번지)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〇〇〇로 한다.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〇〇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김대한이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이민국에게 낭독해 준 바 모두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였습니다.

2009. 1. 10.

유언자 홍길동 (인)

필기자(증인) 김대한 (인)

증인 이민국 (인)

※ 구수유언증서의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인절차

검인절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 판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는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 검인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상속인·유증을 받은 수증자·유언집행자가 검인을 신청해야 할 이해관계인입니다.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1), 「가사소송법」 제44조제7호).

3. 유언철회

3.1. 유언의 철회

3.1.1. 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항).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제2항).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구별 개념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유언의 취소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錯誤) 또는 사기(詐欺)·강박(強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140조 및 「민법」 제146조).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毀)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6
<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 Q. A는 2007. 12. 31.에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1. 1. 현재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A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A.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B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미리 C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7
< 유언장을 잃어버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나요? > Q. 상속인으로 자녀 1명과 부인이 있는 유언자 A는 2008. 6. 1.에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B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09. 1. 1. 현재 유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B 학교는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B 학교는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참조).

유언철회의 취소

유언철회의 취소

유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및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제2항 및 「민법」 제110조제3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생전행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4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제2항 및 「민법」 제110조제3항).

4. 유언 효력

4.1. 유언의 효력

4.1.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일반적 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유언을 할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즉, 정지조건)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8
< 유언장에 정지조건부 유언을 한 경우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 Q. 유언장에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한다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A. 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하는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A가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조건 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4.1.2. 유언의 무효·취소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무효 사유

찾기 쉬운 생활법령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1조).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민법」에 따른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3조).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란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증하는 유언을 하는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유언의 취소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詐欺)·강박(強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취소사유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본문 및 제140조).

예를 들어, 자신의 병시중을 한 사람에게 유증할 것을 결심했는데, 자신의 병시중을 한 사람이 A가 아니라 B라고 착오하고 B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140조).

"사기에 의한 유언"이란 타인의 기망(欺罔)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강박에 의한 유언"이란 타인의 강박(強迫)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조).

부담부 유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8) 및 제39조제1항).

부담부 유증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9
<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생전에 자녀(1남 1녀)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에 A의 이러한 말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A. A의 이러한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A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60조).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1남 1녀)와 부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0
< 위조한 유언장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 Q. A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로 사망 당시 부인과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A는 어떠한 유언도 하지 않았는데, A의 사후에 상속인인 부인과 자녀는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해 A의 인장을 날인하여 A의 유언장을 작성한 뒤 검인신청을 하였습니다. A의 상속인들이 작성한 A의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A. 유언자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면, 이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서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참조).

4.2. 유증

4.2.1. 유증

"유증"이란

유증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 관련개념

▶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2조).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그 재산이 무상(無償)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2조).

√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유증은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이므로, 재산출연자의 사망과 함께 재산이 이전되는 유증의 효력(「민법」 제1078조부터 「민법」 제1090조까지)에 관한 것만 준용되고, 유증의 방식(「민법」 제1065조), 능력(「민법」 제1061조부터 「민법」 제1063조까지), 승인·포기(「민법」 제1074조부터 「민법」 제1077조까지)에 관한 것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유증의 종류

포괄유증(包括遺贈)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의 전부를 에게 준다' 또는 '유산의 반을 에게 유증한다'고 하는 것이 포괄유증에 해당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특정유증(特定遺贈)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부동산'을 타인에게 준다거나, 'B 은행 채권'을 타인에게 준다는 등의 내용이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 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결혼을 하면 내 재산의 반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B가 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유증하겠다' 등이 조건부 유증이 됩니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기한(期限)"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성년이 되면 A에게 내 재산의 반을 유산으로 주겠다', '2030. 1. 1.이 되면 B에게 1000만원을 유증하겠다' 등이 기한부 유증이 됩니다.

"부담(負擔)"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B 부동산을 주겠다' 등이 부담부 유증이 됩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제1항).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수증자(受贈者)

"수증자"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 수증자는 세법상 수익자(受遺者)라고도 합니다.

다만,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부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는 조건성취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2항).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유증의무자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

됩니다.

※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증의 무효·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의 무효·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090조).

4.2.2. 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0조제3항). 따라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2항).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4조).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破棄) 또는 은닉(隱匿)한 사람

<거짓말을 하여 유언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도록 한 사람이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Q. A는 자녀 B, C가 있는 재력가로 평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B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다른 자녀 C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 B가 그 유언장 내용을 알고, A를 속여 C가 아버지 A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유산을 B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하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 B는 이러한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거짓말을 하여 A가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신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B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B는 그 유증을 받을 수 없는 유증결격자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64조, 「민법」 제1004조제4호). 따라서 B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2.3. 포괄유증

"포괄유증"이란

포괄유증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포괄유증의 예

‘내가 죽으면 상속재산 내지 유산의 전부를 에게 유증한다’

‘내 사후에 내 재산의 반을 에게 준다’

포괄유증의 효과

포괄유증의 효과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즉, 유언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따라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등기 또는 인도가 없어도 당연히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민법」 제187조).

※ 주의합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는

것입니다(「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의 결과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는 경우(유언자의 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제1항).

포괄유증의 포기는 상속의 포기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019조부터 제1021조까지).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승인·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포기규정**(「민법」 제1019조부터 제1044조까지)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민법」 제1030조 및 제1041조 참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게 됩니다.

다만, 포괄유증의 승인·포기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한편, 포괄유증의 승인·포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취소가 금지되지만(「민법」 제1024조제1항)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4.2.4. 특정유증

"특정유증"이란

특정유증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유증의 예

‘내 사후에 A 부동산을 에게 준다’

‘내가 죽으면 B 은행 예금채권을 에게 준다’

특정유증의 종류

특정물유증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불특정물유증

"불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불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불특정물(不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쌀 1가마니, 29인치 TV 1대, 자동차 1대 등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불특정물에 해당합니다.

특정물유증의 효과

특정물유증의 효과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실행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즉, 유증의 목적인 재산권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인 경우에는 유증의무자가 이에 따라 이전등기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하는 때에 비로소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86조 및 「민법」 제188조).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양도계약으로 채권은 수증자에게 이전되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제1항 참조).

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에는 양도계약과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508조), 무기명 채권인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23조).

과실취득 및 과실수취비용의 상환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079조).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0조).

※ "과실(果實)"이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 하는데, 천연과실에는 수목의 열매, 가축의 새끼, 토사나 석재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101조제1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그 밖에 물건을 법정과실이라 하는데, 법정과실에는 임료, 지료, 이자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101조제2항).

※ "필요비(必要費)"란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 자체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보험료, 물건의 보관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1조 및 「민법」 제325조).

유증의무자가 유증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수증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1항).

※ "필요비(必要費)"란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 자체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보험료, 물건의 보관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유증의무자가 유증목적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증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2항).

※ "유익비(有益費)"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을 말하며, 개수(改修)비용, 도배를 새로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87조제1항).

다만, 이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이행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7조제2항).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5조).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086조).

채권이 유증목적물인 경우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84조제1항).

위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84조제2항).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86조).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滅失), 훼손(毀損)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83조).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86조).

불특정물유증의 효과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2조제1항).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흠결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1조제1항).

이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 없는 목적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제2항).

수증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유증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흠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1082조제2항).

특정유증의 승인·포기

특정유증의 승인·포기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제1항).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제2항).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5조제1항).

그러나 유언이 착오(錯誤), 사기(詐欺)·강박(強迫)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5조제2항 및 「민법」 제1024조제2항 본문).

√ 유증의 승인·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제2항 및 「민법」 제1024조제2항 단서).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1076조).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응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7조제1항).

위(「민법」 제1077조제1항)의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77조제2항).

4.2.5.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負擔附 遺贈)

찾기 쉬운 생활법령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 부담부 유증의 예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나의 OO은행 예금채권을 주겠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제1항).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 제1088조제2항).

부담부 유증의 취소

부담부 유증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조).

"최고(催告)"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이란 구체적인 부담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말합니다.

부담부 유증의 취소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8]

취소의 심판절차에는 수증자가 참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9조제1항).

취소의 심판에 대해 수증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89조제2항).

※ "즉시항고(即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부담부 유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수증자가 받았을 재산은 상속인에게 다시 귀속됩니다(「민법」 제1090조).

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41조).

그러나 취소 전에 유증의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 등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민법」 제1111조 단서).

5. 유언집행

5.1. 유언의 집행

5.1.1.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이란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구수유언의 검인절차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유언-유언하기-구수증서유언-구수증서유언](#)>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인절차

검인의 청구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제1항).

※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性狀)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41)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7호].

"상속개시지"란 사망한 유언자의 주소를 말하고, 유언자가 다른 장소(예를 들어 근처의 병원 등)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지는 유언자의 주소입니다.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민법」 제1091조제1항)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1항).

이때 제출해야 하는 유언장 등은 정해진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유언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증서라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의 무효·취소 및 철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그 전제로서 유언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유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92조).

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2항).

이때 "봉인한 유언증서"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이를 봉투에 넣어 엄봉하였더라도 개봉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유언증서·녹음의 검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3항).

가정법원은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할 때에는 개봉과 검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1항).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고, 작성된 조서에는 판사,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2항).

- √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 √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 √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 √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 √ 사실조사의 결과

검인의 고지 및 비용문제

검인의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 그 밖에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8조).

검인의 비용문제

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제1항).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12
< 검인하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나요? > Q.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이를 검인하지 않으면, 유언장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A.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참조).

5.1.2.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의 집행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의 집행을 필요한 유언

유언의 집행을 필요한 유언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민법」 제850조 및 「민법」 제846조)

인지(認知)의 신고(「민법」 제859조제2항)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민법」 제1074조부터 「민법」 제1090조까지)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민법」 제47조제2항)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3조)

"유언집행자"란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8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유언집행자의 결정

유언자의 지정 및 지정위탁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할 때, **‘유언집행자는 임을 지정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할 때, **‘유언집행자는 가 지정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자로부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94조제1항).

상속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94조제2항).

상속인

지정 및 위탁의 방법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의 선임(選任)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제1항).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청구서(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제1항).

※ "즉시항고(即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1096조제2항).

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에 관한 통지

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에 관한 통지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제1항).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제2항).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낙여부를 응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97조제3항).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099조).

재산목록작성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제1항).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제2항).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유증목적물에 관해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집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2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103조제1항).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말합니다.

유언집행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2조제1항).

유언집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 대해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민법」 제682조제2항 및 「민법」 제121조제1항).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상속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유언집행자에게는 그 선임감독의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민법」 제682조제2항 및 「민법」 제121조제2항).

이때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임된 제3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 유언집행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민법」 제682조제2항 및 「민법」 제123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유언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유언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3조).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4조제1항).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4조제2항).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5조).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는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사무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91조).

유언집행사무의 종료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92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제1항).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제2항 및 「민법」 제686조제2항).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언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제2항 및 「민법」 제686조제3항).

유언집행자의 사퇴 및 해임

유언집행자의 사퇴

찾기쉬운 생활법령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제2항).

유언집행자의 해임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제3항).

※ "즉시항고(即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6. 상속세납부

6.1. 상속세 납부

6.1.1. 상속세 납부

수유자의 상속세

"상속세"란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9호)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으로,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라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수증자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 합니다.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상속세의 산정순서

상속세 산정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②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제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1항)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액)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2항).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른 과세표준별 세율

- ⑤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상속세산출세액-신고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및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⑥ 상속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상속세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상속세의 계산방법

-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
- √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
-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상속재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
-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재해손실공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태아를 포함함), 미성년자공제, 65세 이상인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금융재산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재해손실공제”란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다만, 이하 세 번째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실제 납부액 계산하기

납부액 계산

위의 방식대로 유언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3

<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

Q. 유족인 부인 1명과 자녀 1명,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1명이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7, 2/7, 2/7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7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등은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의 납부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위 1. 외의 경우: 100분의 20

법정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100,000분의 22

찾기 쉬운 생활법령

분납·연납 및 물납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비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전쟁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한 재산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한도액이 2억 원 이내인 경우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족보와 제구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그 밖에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